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신청인대표자 선정서				
신청인 대표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승선자와의 관계 :		의	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
	대리인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	
아래 위임자들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임자들의 ([]배상금 []위로지원금)의 지급신청, 지급결정 동의, 지급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신청인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위임자 (신청인)				
1	성명: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주소:		휴대전화번호	
	승선자와의 관계 :		의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	
2	성명: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주소:		휴대전화번호	
	승선자와의 관계 :		의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	
3	성명: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주소:		휴대전화번호	
	승선자와의 관계 :		의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	
4	성명: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주소:		휴대전화번호	
	승선자와의 관계 :		의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	
5	성명: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주소:		휴대전화번호	
	승선자와의 관계 :		의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	

첨부서류	모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신청인대표자 선정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. 다만,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)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------	--

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

- 희생자 유족 중 배상금의 지급신청 시 대표자 선정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.
- 「민법」상 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(「민법」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, 제1009조 참조).
 - 직계비속(자녀·손자·손녀)이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보다 선(先) 순위가 됩니다.
 -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(즉, 자녀가 손자·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).
 -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,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,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.
 -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고,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.
- 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하여 그 중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희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에 대한 위로지원금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되,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구조된 승선자가 신청인대표자가 됩니다. 다만, 구조된 승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대표자가 되고, 구조된 승선자가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)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배상금 또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적고,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)이 위임자 "○○○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△△△"로 적은 후 "서명 또는 날인"하여야 합니다.